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7. 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7월 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5회(제1차정례회) 제2차 위원회(2004년 7월 5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가.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처리업자 및 배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내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05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려워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환경부의 조례 준칙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사업장의 주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 효율적인 음식물류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품목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 수거기산 등을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수거·운반·처리수수의 감면 대상자 신설(안 제1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거·운반·처리수수료 징수업무의 위탁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 (안 제14조)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안 별표3)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창수)

-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처리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다 원활히 처리하고 금년 7월부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코자 현실에 맞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하지 않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토록 한 것은 객석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예상되며,
- 11조의2 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에서 3항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 선정방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와 11조의3 수수료징수업무의 위탁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
------------	-----

제출년월일 : 2004. 6.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환경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범리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주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의 품목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 수거시간 등을 마련함(제4조 및 제5조)